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관

사단법인 정관(1975. 08. 21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공익법인 정관(1976. 10. 1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78. 12. 2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79. 12. 1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83. 05. 19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84. 05. 22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85. 02. 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88. 05. 04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91. 05. 2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96. 11. 01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개 정(1999. 11. 1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2000. 05. 0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2007. 05. 14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2010. 07. 2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개 정(2012. 12. 0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속 및 기타 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모집, 연구 및 교환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회합의 개최
 4.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5. 학술의 국제교류
 6. 과학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건물임대사업을 행한다
- ③ 제 2항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구분) ①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개인회원(명예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2. 단체회원
3. 특별회원

제9조 (명예회원 자격) 이 법인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정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금속·재료공학 및 기타 관련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자

제11조 (학생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학생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금속·재료공학 및 기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제12조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이 법인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은 비영리단체라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은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므로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4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8인 이내(선출직 및 임명직 포함)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 ②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관리위원회 등 그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이 임기를 개시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에 취임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실적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정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 (평의원회) ①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따른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附議)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①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긴 과실
4. 기타의 수입

제34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본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사무국 및 부설기관)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연구소 및 기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 (정관개정) 이 법인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 장 김동훈	서울 동대문구 목동 120-52	1977.12.31
부회장 김재중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34-66	1977.12.31
이 사 한봉희	서울 성북구 정릉동 27-4	1977.12.31
이 사 박용진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3	1977.12.31
이 사 김 연	서울 성북구 수유동 252-56	1977.12.31
이 사 김수영	서울 성북구 행당동 340-81	1977.12.31
이 사 김상주	서울 도봉구 미아동 54-57	1977.12.31
이 사 오재현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331-34	1977.12.31
이 사 홍중휘	서울 성북구 구의동 248-57	1977.12.31
이 사 이재영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51	1977.12.31
감 사 윤석상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7	1977.12.31
감 사 민병선	서울 종로구 혜화동 5-8	1977.12.31

부 칙

- ①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5. 8. 21)로 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0. 10. 14)로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8. 12. 26)로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정관 중 평의원에 관한 사항 1980년도~1981년도 임원 선거시부터 적용한다.
- ④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79. 12. 14)로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3. 5. 19)로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4. 5. 22)로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5. 2. 16)로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88. 5. 4)로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1. 5. 28)로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정관 제17조 제3항 개정 이전에 3년 이상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에 취임하였던 회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에 재취임할 수 없다.
- ⑩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6. 11. 1)로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9. 11. 14)로부터 시행한다.
- ⑫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0. 5. 4)로부터 시행한다.
- ⑬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07. 5. 14)로부터 시행하며 허가연도의 수석부회장은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 ⑭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0. 7. 21)로부터 시행한다.
- ⑮ 이 개정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2012 . 12. 4)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75년 8월 21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 산		600,000	집기비품
동 산		2,400,000	당좌자산
합 계		3,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별	수량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	집기비품	책상외 3점		600,000	
동산	당좌자산			1,900,000	입주 보증금
동산	당좌자산			500,000	일반예금
합 계				3,000,000	

<별지 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0. 6. 21. 현재/단위: 백만원)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부 동 산	1건	5,56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8
합 계		5,565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2010. 6. 21. 현재/단위: 백만원)

재산명	종별	수량	단가	평가액	비고
부동산	토지(305.3㎡), 건물(1,116.2㎡)	1건		5,565	
합 계		1건		5,565	

1.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규칙

제정 : 1975. 4. 18 개정 : 1976. 12. 16 개정 : 1976. 7. 24 개정 : 1977. 4. 14 개정 : 1977. 9. 29
개정 : 1978. 10. 31 개정 : 1979. 8. 13 개정 : 1979. 11. 14 개정 : 1980. 11. 10 개정 : 1982. 7. 10
개정 : 1983. 11. 10 개정 : 1984. 3. 14 개정 : 1984. 5. 10 개정 : 1985. 10. 26 개정 : 1987. 3. 20
개정 : 1988. 5. 12 개정 : 1988. 5. 14 개정 : 1990. 10. 14 개정 : 1991. 3. 23 개정 : 1993. 3. 13
개정 : 1994. 3. 19 개정 : 1997. 11. 11 개정 : 1999. 10. 19 개정 : 2000. 5. 14 개정 : 2004. 5. 21
개정 : 2005. 1. 21 개정 : 2007. 5. 14 개정 : 2007. 12. 7 개정 : 2008. 9. 19 개정 : 2009. 3. 13
개정 : 2010. 9. 10 개정 : 2011. 12.09 개정 : 2012. 1. 27 개정 : 2012. 9. 14 개정 : 2013. 5. 31
개정 : 2015. 12. 11 개정 : 2016. 7.15 개정 : 2017. 3. 10 개정 : 2017. 7.14 개정 : 2018. 5. 18
개정 : 2018. 9.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관 제44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핵심가치) ① 대한금속·재료학회의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재료 학술 분야를 대표하는 역할
2. 금속을 포함하는 재료 전 학술 분야에 대한 융합 및 다양성 추구
3.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정보교류, 사회봉사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가입) 본 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단체, 회사는 회원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단체 및 회사는 입회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회비) 회비는 개인회비(일반회원, 학생회원), 단체회비, 특별회비로 하고 회원의 회비에 관한 세부내용은 회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직장 또는 자택주소의 변경 시는 반드시 본회에 통보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 [개정 2016.7.15.]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위원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각종 임시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장은 회원에게 정관 제15조 등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관련 내용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징계심의를 담당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회장단 회의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단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징계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회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 징계위원장은 징계 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징계위원 및 징계협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때에 징계협의자에게 본 조 제5항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⑤ 징계협의자는 징계심의를 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협의자에 대하여 징계협의를 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⑦ 징계위원회는 재적 징계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출석한 징계위원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안을 통과한다.

제8조(이사회의 징계의결)

-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이 통과된 때에는 회장은 그 징계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징계 심의를 위한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는 제7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이사 중 2/3이상 찬성으로 징계 안을 의결한다.
- ④ 이사회에서 징계 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회장은 징계대상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⑤ 제명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와 재료마당에 제명사유와 함께 명단을 공지한다. 제명된 사람은 학회 내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며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도 불허된다.

제9조(명예회원의 추천) 정관 제9조에 정하는 명예회원의 추천은 정회원 6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이 유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제3장 평의원

제10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전회장, 전임부회장, 전임감사 및 현직임원(지부장제외)의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에 의한 선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선출 평의원의 정수는 15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5.5.22.]

제11조(평의원회의 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 2.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3.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평의원의 임기)

- ① 선출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전회장은 종신, 전임부회장 및 전임감사는 70세, 나머지 현직임원은 임기 중으로 하며, 퇴임 이사는 퇴임 후 5년 동안으로 한다.[개정 2016.5.20.]
- ② 선출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평의원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6조(서면결의의 금지)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17조(평의원의 선출방법) 평의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한금속·재료학회 평의원 선거관리 규정**”에 정한다.

제18조(직선평의원 후보추천) 직선평의원 후보추천은 직선평의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단의 검토를 받아서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19조(선출직 임원 후보자 선출)

- ① 선출직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자 선출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후보들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한다.
- ③ 평의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산업계 부회장 1인(격년), 감사2인(격년)후보자를 선출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 ④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임원 후보자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당선이 확정된다.
- ⑤ 임원 후보자 선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한금속·재료학회 선출직 임원 후보자 추천 선거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이사의 선임)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 2주일 전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선거, 피선거권) 평의원의 선거, 피선거권은 당해연도 2/4분기 내에 당해연도 회원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평의원 후보자격은 평의원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선거결과 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및 평의원 선거결과를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전회장의 권한) 전에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전회장이라 부른다. 전회장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24조(평의원의 권한) 평의원은 취임을 수락함으로써 규칙 제3장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의 인계) 신규 임원은 차기 사업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회의 개최) 이사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개최 하되 회무 수행 상 필요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결석임원의 출석 간주) 이사회에 결석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8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그 의장이 되어 주요 업무를 처리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회의) 운영회의는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로 구성되며 담당부회장이 소집한다. 담당부회장이 의장이 되며 부서의 주요회무를 심의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제30조(임원의 직무별 명칭)

- ① 회장과 감사 이외의 임원들의 직무별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회장(학술, 기술, 편집, 사업 등), 이사(총무, 재무, 편집, 사업, 학술, 기술, 국제, 교육, 대외협력, 산학협력, 지역사업 등)
- ② 부회장은 선출직과 임명직을 둘 수 있다.
- ③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소재담당자를 학회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본 학회의 이사 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임원수를 따르되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지역사업이사 및 정부기관 근무자는 비등기 이사로 한다.

제31조(회무의 분장) ① 본 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이 임원들이 분담하여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회장단회 및 학회상 선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위원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부회장(편집담당) 본회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3. 부회장(사업담당) 사업기획, 대외협력, 국제사업, 교육, 공학인증, 지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부회장(기술담당) 기술관련 업무 및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부회장(학술담당) 춘추계 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인사, 행사계획을 담당하며 문서 및 서무 일반의 사무국 업무를 감독한다.
7.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예산의 집행, 결산 등 본 회의 재무회계를 감독한다.
8. 편집이사는 편집담당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모든 간행물의 편집, 발간을 담당한다.
9. 사업이사는 사업담당 부회장을 보좌하여, 국제사업 등의 사업 계획과 시행을 담당한다.
10. 기술이사는 기술담당 부회장을 보좌하여 기술강습회,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11. 국제담당이사는 외국과의 학술교류와 학술단체 교류 및 해외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2. 교육담당이사는 금속 및 재료관련 교육과 공학교육인증 관련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3. 대외협력담당이사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대외 홍보 관련 업무 연락 및 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4. 지역사업이사는 본 회와 지부의 연락 및 지부의 활동을 담당한다.
15. 간사는 담당이사를 보좌하고 기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단,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2조(회무의 보고) 분장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은 그 업무의 수행 상황을 회장단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기구

제33조(사무국, 연구소 및 부설기관)

- ① (사무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② (연구소 및 부설기관) 본회는 금속·재료정책연구소 및 기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③ 부설기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사무국의 정원, 정년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위원회 설치) ① 본 학회는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기술위원회, 편집위원회, 학회상추천위원회,
학회상선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상설위원회를 두며 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정한다.

-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이사, Editor-in-Chief, Editor 및 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장이 임
명한다.
- ③ 회장은 필요시 각종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무) 상설위원회는 매회귀마다, 임시위원회는 그의 임무 종료와 동시
에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지부 및 분회

제36조(지부설치) 정회원 50인 이상인 지방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7조(지부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지부장 1인, 수석부지부장 1인, 부지부장 3인 이내, 감사 2인, 간사 약간인

제38조(지부임원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지부임원의 선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정회원(당해연도 회원회비를 납부
한 정회원) 중에서 지부 총회시 지부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지부장이 위
촉한다.

제40조 ① 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총괄하고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총회 및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지부장은 학회 지역사업이사가 된다.

제41조 수석부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는 수석부지부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42조(지부 감사의 직무) ① 지부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간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간사회, 지부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본 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부총회 또는 간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지부의 재산상황 또는 지부총회, 간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부장 또는 지부 총

회, 간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지부총회 및 간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3조(총회의 개최) 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제44조(지부의 사업) 지부가 본 회의 사업이나 명예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할 시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경비의 보조) 지부의 경비는 본 회에서 보조한 보조금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46조(보고) 지부는 총회 회의록 사본과 전연도 사업실적, 세입세출결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서를 매년 1월말 까지 본 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의 제정) 본 규칙에 제정된 사항 외 지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부규칙으로 정한다. 지부규칙은 본 회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8조(분회의 설치)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에는 분회장 1인을 두되 지부가 설치된 지방의 분회는 지부장 추천에 의거 회장이 위촉하며 그 외 지방의 분회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8장 사 업

제49조(회지 및 도서의 간행) 본회는 연 6회 이상 회지 및 2회 이상 회보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지 및 회보 이외의 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회보에는 기술해설,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50조(발행물의 배포)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회보(재료마당)를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 기타 간행물은 실비가격으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51조(강연회의 개최)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는 금속 및 기타 재료에 관련된 학술 강연 및 일반 강연으로 회원의 지식 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제52조(견학회, 강습회, 좌담회의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기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장 포 상

제53조(학회상) 본 학회는 금속·재료상, POSCO학술상, LS학술상, 세아해암학술상, 현송공학상, 석천학술상, 공로상, 특별공로상, 기술상, 논문상, 굿리뷰어상, 신진학술상, 신진기술상, POSCO젊은철강상, 전자·정보재료상, **김용진상**, 운동석상, 청웅상, 서정상, 철재상, 재료조직사진상, 포스터발표 우수상, 구두발표 우수상, WISET-KIM 젊은연구자상, MMI Springer논문상, EML Springer 논문상 등의 학회상을 포상할 수 있다.[2018.9.14. 개정]

제54조(학회상 선정위원회)

- ① 학회상 시상은 총회에서 하되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회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 ② 학회상 선정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 6인의 이사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년도 수상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단, 포스터발표 우수상, 구두발표 우수상은 학술위원회에서 학회상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 ③ 학회상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학회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는 이사회에서 포상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55조(학회상 추천위원회) ① 학회상 추천위원회는 학회의 최고업적상(금속·재료상, POSCO학술상) 및 외부학술상(세아해암학술상, 현송공학상, 석천학술상) 학회 내부상(LS학술상, 기술상, 철재상, 운동석상, 전자·정보재료상, **김용진상**, 공로상, 특별공로상, 신진학술상, 신진기술상, POSCO젊은철강상)후보자를 추천한다. [2018.9.14. 개정]

- ② 학회상 추천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명의 부회장, 전회장 1인, 재무이사, 총무이사, 회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위원회를 매년 1월에 구성한다.
- ③ 학회상 추천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6조(학회상 신설 및 변경)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상을 신설 및 변경 할 수 있다.

제57조(포상규정)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회상 포상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8조(의결방법)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9조(회의록) 총회, 평의원회, 회장단회의, 이사회 및 운영회의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부의 의사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

제60조(규정제정)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1991년 3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1991년 10월에 실시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거시 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도 추천한다.
- ②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1993년 3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본 규칙 제34조에 따라 1993년 10월에 실시하는 이사 선임시에는 1991년 10월에 선임된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4명을 교체 선임한다.
- ③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1994년 3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1996년 9월19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⑤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2000년 3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칙은 과기부에서 정관변경이 허가된 날(2007년 5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2009년 3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2010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2012년 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 ⑩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 ⑪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2018년 5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 ⑫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가결된 날(2018년 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2.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지부 규칙

제정 : 1980. 4. 4 개정 : 1990. 5. 26 개정 : 1991. 5. 18 개정 : 1993. 6. 5 개정 : 2012. 9.14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에 소속된 지부는 부산·경남, 호남, 대구·경북, 포항, 대전·충청지부라 칭한다.

제2조 본 지부의 사무소는 지부장 소속직장에 둔다.

제3조 본 지부는 사회 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속 및 기타 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①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강연회와 강습회의 개최
2.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이하 본부라 칭한다) 사무 및 사업의 보조
3. 금속 및 기타 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에 관한 자문
4. 기타 금속공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부는 직장 및 단체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① 지부 회원은 학회정관에 규정한 회원으로 각각 다음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 한다.

1. 부산·경남지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
2. 호남지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3. 대구·경북지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4. 포항지부 : 포항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대전·충청지부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

제7조 본 지부 회원의 본 지부에 대한 의무 및 권리는 본부의 정관 및 규칙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①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수석부지부장 1인
3. 부지부장 3인 이내
4. 간 사 약간인
5. 감 사 2인

제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신규임원은 차기사업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를 행한다. 다만,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지부 총회에서 지부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감사는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11조 간사를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부 총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통할하고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총회 및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수석부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는 수석부지부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① 간사는 지부장의 명을 받아 본 지부의 회무를 분장 집행한다.

② 감사는 본부 정관 제21조 규정에 준하여 직무를 행한다.

제15조 지부장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인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본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지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① 회의는 총회 및 간사회로 나눈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부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5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야만 의결할 수 있다.

⑤ 지부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은 회장으로부터 지부장 또는 수석부지부장 승인을 받은 날부터 본부의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17조 ① 정기총회에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부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의 승인
3.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① 간사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및 간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경우에 회의 3일 전까지 지부장이 통고하여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간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 간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지부의 사무를 심의 집행한다.

제20조 ①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간사회는 간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간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 및 간사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① 지부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본부로부터의 보조금
2. 기부금 및 기부물품
3. 자산에서 생긴 과실(果實)
4. 기타의 수입

제22조 기부의 수리는 간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조 지부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4조 지부의 회계 연도 및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지부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간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6조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간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8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지부 재적간사 2/3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본 지부 규칙은 2012년 9월 14일 부로 시행한다.

3. 금속·재료정책연구소 운영규칙

제정: 2011.7.15. 개정 : 2015.12.1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6장 40조에 의거 금속·재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예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연구소는 금속·재료 관련 기술 및 정책에 관한 수탁 및 자체연구, 자문 및 평가, 기술·정책 수립/개발, 특별회원사 등 산업체 연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회 및 재료 전반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를 정부기관 및 재료관련 출연연구소들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소에는 약간 명의 연구전담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의 조직은 연구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인력은 전문분야별 회원 중에서 발탁하여 활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본 조 제2항에 의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는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학회의 직원, 시설, 장비 및 기술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예산) ①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학회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은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5조(업무보고 등) ① 연구소장은 매분기별 또는 중요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을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이사회 및 회장에 대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준용 등) ① 연구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관련 제반규칙을 준용한다.

②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소장이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규정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 평의원 선거관리 규정
3. 선출직 임원후보자 선거 규정
4. 학회상 포상규정
5. 지부운영 규정
6. 회비규정
7. 사무국 처무규정
8. 회계사무 규정
9. 여비규정
10. 편집관련 위원회 규정
11. 논문투고 규정
12. 논문심사 규정
13. 사업위원회 규정
14. 학술위원회 규정
15. 학술강연 및 발표초록 투고 규정
16. 기술위원회 규정
17. 분과위원회 규정
18. 기획 위원회 규정
19. 국내/국제학술행사개최에 따른 지원 규정
20. ENGE 학술행사 운영 규정
21. 연구부정행위 관련 규정
22. 자문위원회 규정
23. 사무국 직원 인사보상위원회 규정
24. 기금위원회 규정

1.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1979. 7. 9, 개정 : 2012. 9. 14

제1조 본 규정은 학회규칙 제34조에 의거 학회 선출평의원 및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회의 선출평의원 및 임원선거(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둔다.

제4조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의원 선거인명부의 작성
2. 직선평의원 투표지 발송, 접수 및 개표 관리
3. 학회장과 공동으로 평의원 당선 통보
4. 학회 임원선출 선거관리 및 진행
5. 정기총회에 평의원 및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승인 요청

제5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장은 학회장과 공동으로 평의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소집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위임 및 결의방법은 본 회 규칙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4~2015년도 평의원 및 2013년도 임원선거부터 적용한다.

2.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평의원 선거관리 규정

제정 : 1993. 3. 13 개정 : 1999. 10. 9 개정 : 2011. 12. 9, 개정: 2012. 9. 1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칙 제17조에 의거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을 포함하는 선출평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평의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당해 연도 회비를 2/4 분기내에 납부한 개인회원에 한정한다. 평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중 당해 연도 정원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평의원수) 본 학회 차기 선출평의원 정수는 당해 연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선출평의원 선거) ①선출평의원 선거는 직선평의원은 직접선거로 간선평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1. 선출평의원 정원의 3/5는 정기총회 2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온라인 직접투표로 직선평의원을 선정하고, 잔여 2/5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간선평의원회의에서 간선평의원을 선정한다.
2. 직선평의원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무기명 연기식으로 투표 한다.
3. 직선평의원은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서로 당선을 결정한다.
4. 간선평의원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직접선거로 선출된 직선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을 소집하여 간선평의원 선출회의를 통해서 평의원을 선출한다.

제5조(직선평의원 후보자 구성)

- ① 직선평의원 후보자는 직선평의원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 규정에 따라 선정 한 후 회장단에 제출하여 추천 검토를 받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 ② 직선평의원 후보자는 직선평의원수의 3배수를 추천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직선 평의원 후보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정회원수 비율에 따라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수는 1항의 규정을 따르되, 동일단체 회원에서는 선출평의원 정원의 8%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단수는 1인으로 한다.
 3. 회장단은 선출평의원 후보자 정원 10% 이내에서 회원 수가 적은 단체 또는 단위 직장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4. 산업계 선출평의원 후보자는 1항의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비율배정원칙을 따르되 산업계 내에서 후보 배정시 학회 특별회원은 학회 회비 납부액을 정회원 수에 가산하여 후보자를 배정한다.
 5. 후보자는 동일 직장에서는 직위 순으로, 직위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단 학회 활동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③ 직선평의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부회장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촉된 위원장의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평의원으로 선출된 회원은 평의원 취임동의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평의원이 되며, 본 회에 규정된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선출된 평의원 중 평의원 취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의원 취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고, 직접투표 득표순위 차점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8조 본 규정의 개폐는 본 회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이상의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선출직 임원 후보자 선거 규정

제정 : 2012. 9. 14. 개정 : 2015. 12. 11, 개정 2017. 9.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출직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임원 후보자 선거의 선거권은 임기 내에 있는 선출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에게 있다.

제3조(임원 후보자 추천) ① 평의원에서 투표로 결정 할 임원 후보자의 추천은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전회장 2인(직전회장 및 전전회장 우선 참여, 불참 시 최근 순으로 참여), 평의원 12인 합계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2017.9.8.]

2. 상기 평의원 12인은 산업체 3인, 연구소 3인, 학계 6인으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에 들어갈 산업체, 연구소, 학계의 기관은 평의원 수가 많은 기관 순으로 하며, 추천위원회의에 들어갈 기관의 대표자는 평의원회의 2주전까지 해당 기관 평의원들이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위원장께 통보해야 한다.[2017.9.8.]

제4조(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직무) 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자를 선정하여 평의원회의 1주일 전에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때 감사 및 부회장 후보도 함께 추천하여 게시한다.

제5조(후보자격 및 추천자 수)

① 회장 후보자는 이사 역임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회장 후보자는 전·현직 평의원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산업계 부회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 후보자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④ 후보자는 선출 임원의 배수 이내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거) 임원 선거는 평의원의 직접선거로 선출 하며, 다득표자를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7조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7도 임원 후보자 선거시부터 적용한다.

4.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학회상 포상 규정

제정 : 1976. 2. 16 개정 : 1978. 4. 14 개정 : 1978. 6. 13 개정 : 1980. 5. 17 개정 : 1980. 7. 11
개정 : 1982. 9. 17 개정 : 1987. 13. 20 개정 : 1994. 10. 15. 개정 : 1994. 12. 10 개정 : 2000. 5. 26
개정 : 2004. 5. 21 개정 : 2007. 12. 7 개정 : 2009. 3. 13 개정 : 2011. 3. 11 개정 : 2012. 1. 27
개정 : 2012. 9. 14 개정 : 2015. 5. 22 개정 : 2015. 12.11 개정 : 2017. 3. 10 개정 : 2017. 7. 14
개정 : 2017. 12 .8 개정 : 2018. 5. 18 개정 : 2018. 9. 14

제1조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학회는 금속·재료에 관한 학문 및 기술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이 규정에 의거 포상한다.

제3조 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은 기본적으로 년 1회 수여하되, 포스터발표 우수상과 구두발표 우수상은 년 2회 특별공로상은 필요시 수여할 수 있다.

② 학회상은 본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학술상 수상자 선정 시에는 학회 저널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다.[2017.12.8.]

③ 학회상의 부상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4조 금속·재료상은 금속·재료 분야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학술상은 POSCO학술상, LS학술상, 세아해암학술상, 석천학술상이며, 각 상은 다음과 같은 회원에게 수여한다.

① POSCO학술상은 금속 및 재료공학 전 분야에서 최고의 논문 또는 저술 활동 등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LS학술상은 금속 및 재료공학 전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관련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세아해암학술상은 세아그룹 창업자이신 故 해암(海巖) 이종덕 회장의 호를 따서 세아해암학술재단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으로 금속 및 재료공학 전 분야에서 저술, 논문발표 등을 통해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50세 전후의 연구자를 지원, 격려하기 위해 수여한다.

④ 석천학술상은 금속 및 재료 발전에 기여한 50세 미만의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현송공학상은 동부제강(구 일신제강) 창업자 故 현송 주장균 사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공학상으로 금속 및 재료공학 전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관련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력 25년 이상인 출연연구소 및 산업체 근무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 ① 공로상은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피포상자는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대표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회원으로 한다.

제8조 ① 논문상은 본 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지,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및 Electronic Materials Letters에 게재된 전 2년간의 논문(전년부터 계속 게재된 것도 포함)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1. 전에 이 상을 받은 회원이라도 그 연구내용이 다르면 포상의 대상이 된다.

2. 피포상자는 논문의 투고나 포상시에 회원이어야 한다. 단,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및 Electronic Materials Letters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기술상은 금속·재료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만 40세 이상의 출연연구소 및 산업체 근무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 신진학술상은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여 금속·재료공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40세 미만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11조 신진기술상은 금속·재료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만 40세 미만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12조 POSCO젊은철강상은 철강분야에서 학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만 45세 미만의 회원에게 수여하며, 학술분야와 기술분야를 매년 교대로 시상한다. [신설 2017. 3. 10]

제13조 전자정보재료상은 전자 및 정보재료 분야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14조 윤동석상은 故 윤동석 회원으로부터 기탁 받은 학회상 기금 이천육백삼십오만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학회상 기금으로 수여 하는 상으로, 금속 및 재료 분야에서 학술적, 기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5조 청용상은 故 김수영 회원으로부터 기탁 받은 기금 구백만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학회상 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금속 및 재료 분야에서 학술적, 기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6조 서정상은 故 박평주 회원으로부터 기탁 받은 기금 일천만원에서 발행하는 수익과 학회상 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연구소 또는 기업에 재직하면서 금속·재료 분야에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7조 철재상은 故 양훈영 회원으로부터 기탁 받은 기금 일천만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학회상 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철강분야에서 학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8조 김용진상은 미래소재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018.9.14. 신설]

제19조 ① 재료조직 사진상은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재료조직에 관한 사진을 제시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본 상의 수상작품은 다음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공모규정에 따라 매년 소정의 기일까지 본 회 사무국에 도착하도록 공모한다.
응모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선정위원회는 응모작품 중에서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다만, 해당하는 작품이 없을 시에는 수상하지 않는다.
- ③ 재료조직 사진작품은 다음의 공모규정을 따른다.
 1. 재료조직사진의 공모는 학술 및 기술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기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 작품을 선정, 수상한다. 다만, 해당하는 작품이 없을 때에는 수상하지 않는다.
학술부문: 시료, 방법, 결과 등에 있어서 학술적 가치, 창의성 등을 주안으로 하는 것
기술부문: 시료제작, 시료처리, 사진처리 그 외에 대한 방법이나 기술을 주안으로 하는 것
또는 교재나 사진집의 편집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재료조직사진
 2. 응모작품에는 학술, 기술 두 부문의 구분 명기 외에 설명, 제명, 시료부식액, 배율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을 부기한다. 또한 사진의 내용에 관한 설명 외에 응모작품의 특색(심사를 받는데 작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요점, 학술부문에 대해서는 그의 학술적 의의)를 기재한 설명서를 필히 첨부한다.
 3. 사진과 설명문은 반드시 45×60cm의 하드보드 1매에 붙여서 제출할 것. 다만, 응모작품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20조 포스터발표 우수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 논문을 발표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21조 WASET-KIM 젊은연구자상은 우수한 논문 또는 우수한 발표를 한 발표한 젊은 여성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제22조 굿리뷰어상은 최근 2년 내 최다 논문심사를 해준 심사위원에게 수여한다.

제23조 특별공로상은 본 학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24조 학회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상장, 상패, 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속·재료상, POSCO학술상, 세아해암학술상, LS학술상, 현송공학상, 석천학술상, POSCO젊은철강상 : 학회상 추천위원회 및 평의원
2. 기술상, 철재상, 서정상, 운동석상, 청웅상, 전자·정보재료상, **김용진상**, 공로상, 특별공로상 : 평의원
[2018.9.14. 개정]
3. 신진학술상, 신진기술상 : 학회 회원
4. 논문상, 굿리뷰어상, WASET-KIM 젊은과학자상, Springer 논문상 : 각 편집위원회

제26조 ① 포상의 수상자는 다음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추천하려는 자는 후보자의 추천서를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상자의 선정은 학회상 선정위원회가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스터발표 우수상과 구두발표 우수상은 학술위원회에서 별도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의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를 후보로 결정한다.
 4.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연도에는 수여하지 않는다.
 5. POSCO학술상, 세아해암학술상, 현송공학상, LS학술상, 석천학술상 수상자는 수상 후 5년 이내의 중복 수상을 금지한다.
- ② 금속·재료상을 제외한 상을 받는 자는 추천서나 포상시에 본 학회 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제27조 ① 각 상의 포상 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속·재료상, POSCO학술상, LS학술상, 세아해암학술상, 현송공학상, 석천학술상, 전자·정보재료상, **김용진상**, 운동석상, 서정상, 철재상, 청웅상, POSCO젊은철강상 : 1건 [2018.9.14. 개정]
 2. 공로상, 특별공로상, 기술상, WASET-KIM 젊은연구자상, 굿리뷰어상, Springer 논문상 : 3건 이내
 3. 신진학술상, 신진기술상 : 4건 이내
 4. 논문상 : 6건 이내
 5. 재료조직 사진상 : 각 부문별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이내, 장려상 2건 이내
 6. 포스터발표 우수상 및 구두발표 우수상 :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건수에 따름
- ② 각 상은 1인 1건으로 하며 논문상, 굿리뷰어상, Springer 논문상, 재료조직사진상, 포스터발표 우수상, 구두발표 우수상을 제외하고 동일인에게 1회 이상 수여하지 않는다.

제28조 학회상에 수상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학회상기금에서 사용하며, 학회상기금은 회원 및 외부기관에서 기증 받을 수 있다. 학회상 기금 운영 방법은 본 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 학술상 수상자는 본 학회 학술지에 리뷰논문을(review paper)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이사회가 결의한 날(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이사회가 결의한 날(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1 학회상 세부 규정

상 명	수상 시기	세부 규정	부상
POSCO 학술상	춘계	금속 및 재료공학 전 분야에서 최고의 논문 또는 저술 활동 등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함	1500만원
LS학술상	춘계	금속 및 재료공학 전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관련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함	1000만원, 금10돈
현송공학상	춘계	금속 및 재료공학 전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관련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경력 25년 이상인 자에게 수여함	1000만원
신진학술상	춘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금속·재료공학 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만 40세 미만의 자에게 수여 함	50만원
세아해암학술상	추계	금속 및 재료공학 분야에서 저술, 논문발표 등을 통해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50세 전후의 연구자를 지원, 격려하기 위해 수여함	1000만원
석천학술상	추계	석천학술상은 금속 및 재료 발전에 기여한 50세 미만의 연구자에게 수여함	1000만원
금속·재료상	추계	금속 및 재료 분야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학회의 최고영예인 금속·재료상을 수여함	금메달 (금 30돈)
POSCO젊은철강상	춘계	철강분야에서 학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만 45세 미만의 회원에게 수여하며, 학술분야와 기술분야를 매년 교대로 시상함	300만원
전자·정보재료상	추계	전자 및 정보재료 분야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함	100만원
김용진상	추계	미래소재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100만원
운동석상	추계	금속 및 재료 분야에서 학술적, 기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함	100만원
청용상	추계	금속 및 재료 분야에서 학술적, 기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함	100만원
철재상	추계	철강분야에서 학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함	100만원
서정상	추계	금속·재료 분야에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함	100만원
공로상	춘계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함	100만원
특별공로상	필요시	학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함	금메달 (선정위에서 결정함)
기술상	춘계	금속·재료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만 40세 이상의 자에게 수여함	100만원
신진기술상	춘계	금속·재료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만 40세 미만의 자에게 수여함	50만원

상 명	수상 시기	세부 규정	부상
논문상 (대한금속재료학회지, MMI, EML)	춘계	<p>대한금속·재료학회지 논문상 : (제1부문) 최근 2년 내 대한금속재료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에게 논문상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제2부문) 최근 2년 내 타 SCI 저널에 대한금속·재료학회지 게재 논문을 다수 인용한 자에게 수여함 원칙으로 함 ※ 수상자 추천은 KJMM 편집위원회에 의뢰함</p> <p>MMI 논문상 : (제1부문) 최근 2년 내 MMI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에게 논문상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제2부문) 최근 2년 내 타 SCI 저널에 MMI 게재논문을 다수 인용한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수상자 추천은 MMI 편집위원회에 의뢰함</p> <p>EML 논문상 : (제1부문) 최근 2년 내 EML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에게 논문상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제2부문) 최근 2년 내 타 SCI 저널에 EML 게재논문을 다수 인용한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수상자 추천은 EML 편집위원회에 의뢰함</p>	50만원
Springer 논문상	추계	<p>MMI : (1) 전연도 MMI 논문 인용 횟수 최다 2위 (1위는 춘계 학회에서 논문상으로 시상) (2) 전연도 MMI 논문 인용 횟수 최다 3위 혹은 전연도, 전전연도 MMI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MMI 논문 중 택 1 : Editorial Committee 결정 (3) 전연도 MMI 논문 중 질적으로 우수 하거나 MMI의 발전에 기여를 많이한 논문: Editorial Committee에서 결정</p> <p>EML : 전연도 EML 논문 최다 인용자 3명에게 수여</p>	<p>EML 1등 200유로 2등 150유로 3등 100유로</p> <p>MMI 150유로</p>
굿리뷰어상 (대한금속재료학회지, MMI, EML)	춘계	<p>대한금속·재료학회지 굿리뷰어상 : 최근 2년 내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최다 논문심사를 한 심사위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수상자 추천은 KJMM 편집위원회에 의뢰함</p> <p>MMI 굿리뷰어상 : 최근 2년 내 MMI 최다 논문심사를 한 심사위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수상자 추천은 MMI 편집위원회에 의뢰함</p> <p>EML 굿리뷰어상 : 최근 2년 내 EML 최다 논문심사를 한 심사위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수상자 추천은 EML 편집위원회에 의뢰함</p>	50만원
재료조직 사진상	춘계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재료조직에 관한 사진을 제시한 자에게 수여함	최우수 40, 우수 30 장려 20만원
포스터발표 우수상	춘/추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 논문을 발표한 학생에게 수여함	5만원
구두발표 우수상	춘/추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학생에게 수여함	10만원
WISET·KIM 젊은연구자상	추계 3건	우수한 논문의 게재 또는 우수한 발표를 한 젊은 여성연구자에게 수여함. First author에게 수여하며, 수상 자격은 발간 당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박사 후 연구원까지 포함 한다.	50만원 (외부-30 학회-20)

5.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지부 운영 규정

제정 : 1980. 5. 10 개정 : 1984. 5. 10 개정 : 2012. 9. 14

제1조 본 규정은 규칙 제7장에 의거하여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① 지부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그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지부설치 발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아래의 서류를 본 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회원 50명(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함)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안 1부

제3조 지부설치가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지부설치 보조금을 지불한다.

제4조 ① 지부의 운영을 위한 경비보조는 아래와 같다. 단 지부 재정잔고가 1천만원이 넘는 지부 보조금은 별도의 지부 공동사업비로 적립해 두었다가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지부 재정이 부족한 지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각 지부 지역에 소속된 정회원 연회비의 15%
2. 지부 관할 지역 내에서 지부가 새로 추대하여 승인받은 특별회원 연회비의 30%

제5조 지부장은 지부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부 회무보고를 지부회원 명단을 첨부하여 본 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2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6.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회비 규정

제정 : 1984. 1. 9 개정 : 1988. 5. 14 개정 : 1993. 3. 13 개정 : 1993. 9. 18 개정 : 2011.12. 9 개정 2012.9.14

제1조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규칙 제3조에 의거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회비(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비, 특별회비 액수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학회내규로 정한다.

제4조 ① 종신회원 회비납부는 정회원에 한하며 그 액수는 회원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만 50세 이하 : 당해 연도 회비의 12배
2. 만 51세 이상 : 당해 연도 회비의 8배

제5조 단체회비 및 특별회비 회비납부기간은 매년 3월 말일로 하며, 개인회원의 회비 납부는 회비만료기간 1달 전까지 납부한다. 회비를 미납 시에는 학회 간행물 발송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개인회원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였을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각종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의사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탈퇴한 개인회원이 재입회할 시에는 입회금을 재납입 하여야 하며 신입회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사무국 처무 규정

제정 : 1978. 4. 14 개정 : 2011. 1. 21 개정 2012. 9.14 개정 2015. 12.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관 제40조 규정에 의거 사무국을 구성하고 학회 규칙 제33조에 의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용 및 보직

제2조(적용)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채용, 보직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채용절차)

-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② 기타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5. 신원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서 1통
7. 경력증명서(경력인정을 요구할 시) 1통
8. 사진(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1매

제5조(자격규제)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면직자
4. 병력기피자
5. 이력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

제6조(보직) 보직은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작하나 본 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직 제

제7조(직급)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담당을 둔다.

제8조(직능분류) ① 사무직의 직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국장
2. 부 장
3. 차 장
4. 과 장
5. 대 리
6. 담 당

제 9조(업무분장)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별도의 업무분장 내규에 따른다.

제4장 복 무

제10조(책임완수) 직원은 회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 기능의 확립) 직원은 정관, 규칙, 각종 규정 및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품위유지)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비밀엄수) 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대외적인 발표는 사무국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제14조(근태) ①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시는 당일 12시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질병 결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근무시간 중 외출은 외출부에 기록하여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지각 또는 조퇴가 3회가 달할 때에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

제15조(신고 및 휴가원 제출) 모든 신고와 휴가원은 담당경유 사무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상신한다.

제16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제17조(병가)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8조(공가)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소집되었을 때

2. 업무상 법원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전염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9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관혼상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할 때에는 형편에 따라 다음 기간의 특별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시: 6일 이내
2. 본인의 형제, 자매, 자녀, 손 결혼시: 2일 이내
3.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시: 1일
4.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사망시: 7일 이내
5. 형제, 자매, 자녀, 손,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3일 이내

제20조(절차 및 결과) 본 규정에 의한 휴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음으로써 급여 및 제반 근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손해변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국 업무일지) 각 담당은 매일 근무 상황과 중요사무 처리사항을 회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 주소록) 총무담당은 직원 주소를 비치하고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정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25조(휴일) 본 회의 휴일은 정부 공휴일에 준한다.

제26조(겸직금지)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타 직장에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출장)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직원의 신분 및 퇴직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감봉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직원 면직)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을 때
2.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제30조(휴직)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필요로 할 경우
2.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제31조(직원신분) 직원의 신분은 매년 연봉계약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정년)

- ① 사무국장의 정년은 정함이 없으며, 별도 임용계약에 따라서 결정한다.
- ② 일반 직원의 정년은 과장 이상은 58세, 대리 이하는 55세로 한다.

제33조(고충처리)

- ① 사무국직원은 직무 수행상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 대하여 고충처리위원(총무이사)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② 고충처리위원과의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4조(퇴직) 직원이 퇴직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총무이사에게 알려서 퇴직 전에 면담을 실시한다.

제6장 급 여

제35조(급여체계) ① 연간 총 급여액은 연봉 계약분과 연봉 외 급여의 합으로 구성된다.

1. 연봉 계약 분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2. 연봉 외 급여는 기타 법정수당 및 숙인성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제36조(급여조정) 연봉 계약 분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호봉승급에 해당하는 급여 조정률로 결정하되, 개인의 업무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연봉계산방법) 연봉계산 단위는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연봉으로 계산한다.

제38조(연봉지급방법) 급여의 지급은 월급제로 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39조(지급일) 직원의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0조(급여의 책정) 급여는 국가 공무원 처우 및 급여에 관한 내규를 참고하여 인사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호봉의 책정) 직원 급여의 호봉은 근무연한, 능력 및 전직경험에 의해 책정하고, 1년에 1호봉씩 정기승호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승급, 승호를 할 수 있다. 단, 전직경험이 있는 신입사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난 후 경력을 감안하여 특별 승급 및 승호를 할 수 있다.

제42조(산정방법) ①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2.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당해 월의 1/3을 경과 후 퇴직하거나 휴직하였을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며 1/3에 미달할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3. 면직 또는 정직당한 직원에게는 해직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43조(퇴직금) 퇴직금은 매해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연도 연봉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액수를 마지막달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44조(결근자) 무계출 결근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지급의 특례) 예산사정이 허용할 경우에는 부가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문서처리

제46조(무선접수) 접수된 문서는 접수부에 기록 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수령인을 받아야 하며 발송문서는 발송부에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다만, 기밀문서는 별도로 문서수발을 한다.

제47조(비밀문서) 인비, 비가 표기된 문서는 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개봉하여 처리한다.

제48조(첨부물이 있는 문서) 문서에 현금, 수표, 수입인지,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의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부에 명기하고 그 문서 여백에 첨부물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입하고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다.

제49조(결재) 본 회의 업무진행은 순서에 따라 회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시행하며, 담당부회장, 담당이사 및 사무국장이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대결) 회장이 유고 시는 담당부회장이 대결하고 회장에게 사후 보고한다.

제51조(주요 안전처리) 사업계획 예산, 결산 및 연간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신규 사업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52조(긴급을 요하는 문서) 긴급을 요하는 문서의 처리는 회장 부재시 담당 부회장 또는 담당이사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회장에게 후결을 받는다.

제53조(위임전결)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 집행의 일부를 회장은 담당 부회장에게 위임 전결케 하며 담당 부회장 유고 시는 담당 이사, 사무국장의 순으로 위임 전결토록 한다.

제54조(전결범위)

- ① 수신 발신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행정사무의 집행(인사업무 제외) - 담당이사
- ② 이사회 또는 각종 회의에서 승인 또는 결의된 사항으로서 회장이 승인한 사항의 집행 - 담당 부회장
- ③ 재정에 관하여 세입세출예산 범위 내에서의 수입, 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회장, 재무이사 및 사무국장이 전결하며 그 범위는

1. 건당 500만원 이하 상당의 계약체결, 수입 및 예입, 1건당 320만원 이하의 지출 : 담당부회장 전결
2. 건당 200만원 이하 상당의 계약체결, 수입 및 예입, 1건당 160만원 이하의 지출 : 재무이사 전결
3. 건당 100만원 이하 상당의 계약체결, 수입, 예입 및 1건당 80만원 이하의 지출 : 사무국장 전결
4. 지정된 사실로서 대외에 공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담당이사
5. 회원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 집행 : 담당이사
6.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 담당부회장, 담당이사, 사무국장

제55조(문서처리) 각 담당은 문서의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이 중대한 것은 사무국장이 회장에게 보고 하여 처리방법을 지시받은 후 성안시킨다.

제56조(문서의 보존) 문서는 완결 일자 순으로 역년에 의하여 보존한다.

제57조(문서보관) 완결된 문서는 분류별로 보존하되 비밀에 속하는 문서는 별책으로 하여 표지에 “비”라고 표시 하여 보관한다.

제58조(폐기문서) 폐기문서는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하고 문서목록을 별도로 보존한다.

제59조(완결문서) ① 완결문서는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본 규정의 문서와 유사한 종별에 준하고 유사한 종별 이 없는 문서의 보존기간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상 별

제60조(포상) 포상은 본 회 포상규정에 준하며, 근무 우수자에 대해서는 매년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별도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학회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왔을 때
2. 본 학회의 제 규정 및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거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본 회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본 회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제6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 책 -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2. 감 봉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봉급의 1/3을 감한다.(중감봉 : 4월~6월, 경감봉 : 1월~3월)
3. 면 직 - 그 직에서 해임시킨다.

제 9장 인사보상위원회

제63조(역할) 본 사무국 처무 및 관련한 사무국직원의 급여/상여금/승진 등의 내규에 대한 안건은 인사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4조(구성) 인사보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회장단으로 구성되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위원을 회장이 추가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사무국장 임용 계약은 “서식 1-임용계약서”에 준하여 체결 한다.
- ③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처무규정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처무 및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문서 보존 기준표	
1. 연혁	영구
2. 정관·규칙·규정	영구
3. 법인관계 문서	영구
4. 회의록철	영구
5. 사업실적	영구
6. 금전출납부	영구
7. 임원명부	영구
8. 인사관계 사령원부	영구
9. 회원명부	영구
10. 수상관계철	영구
11. 비품대장	영구
12. 회지, 회보, 논문집	영구
13.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문서	10년
14. 회원단체 입회서류	10년
15. 증명서 발급대장	10년
16. 수입 및 지출결의서	5년
17. 사업계획, 예산서 및 결산서	5년
18. 회비징수대장	5년
19. 각종 행사관계철	5년
20. 임원 이력서철	5년
21. 문서 수발부	5년
22. 상기 1-21 항에 속하지 않는 문서	3년

8.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회계 사무규정

제정 : 1996. 3. 16, 개정 : 2012. 9. 14 개정: 2015.12.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의 회계 사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경리를 하고 재정 상태를 항상 명확히 하고 학회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습 기타 법령에 따라 기장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다음 원칙과 회계 처리의 상식을 준수하여 계정을 처리한다.

1. 수입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일자 내에 통장에 입금하고 수입결의의 절차를 거친다.
2. 지출계정과 수입계정은 직접 상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입 및 지출 결의서는 재무담당직원이 작성한 후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예산 지출은 본 학회의 핵심가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도록 계획한다.

제3조(회계담당자의 업무) 본 회의 회계사무는 임명된 회계 담당자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4조(회계담당자의 책임) 본 회의 사무국장의 직위에 있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회계조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5조(규정의 변경) 본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회계조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나 사무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세칙) 사무국장은 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만들 수가 있다.

제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계구분, 계정과목, 장부

제9조(회계구분) 본 학회의 모든 일반회계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법인세법 등의 관계법령과 회계 관습에 따르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

제10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학회의 필요에 의해 세분하여 항과 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입 지출의 기록에 있어서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근사한 항목을 적용한다.

③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재무이사에게 보고한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1조(계정의 처리)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발생시 그 증표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작성, 보고, 결재)

① 회계 담당자는 매일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계정과목 별로 분개 처리한 일계표와 자금출납 및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② 회계 담당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모든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월계표 및 누계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10일전까지 재무이사 및 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제13조(회계전표)

- ①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금액, 건명 및 거래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② 회계 담당자는 회계증빙을 위하여 전표상의 제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주문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전표의 발행 및 금전 취급)

- ① 회계전표는 증표에 따라 회계담당직원이 발행하여야 한다.
- ②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학회 명의로 행한다.
- ③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할 때에는 재무이사의 사전 결재를 받아 전도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조속히 청산한다.

제15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10년간 보존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장 금전출납

제16조(금전의 범위) 금전이란 현금, 예금, 보수(자기앞수표), 우편환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를 말하며 유가증권은 현금에 준해서 취급한다.

제17조(통장 및 인장 관리) 예금통장과 인장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예금통장의 명의를 원칙적으로 학회명으로 한다.
- ② 일반회계 중 시재금 통장과 인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통장은 사무국장이, 인장은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제18조(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

- ① 금전의 출납은 회장이 임명한 회계담당자가 이를 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 ② 금전의 보관은 사무국장이 그 책임을 진다.
- ③ 사무국장은 필요시 본 조에 규정한 자를 대신해서 업무를 집행할 대리자를 지명할 수가 있다.

제19조(출납) ① 출납책임자는 증표를 첨부한 수입결의서, 또는 지출 결의서에 의하지 않고는 출납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지불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액은 필히 인출 즉시 구좌에 송금 지불한다.
- ③ 회계담당자는 시재 보관금으로 일금 10만원을 보관할 수 있다.

제20조(금융기관과의 거래) ① 금융기관과의 거래의 개시 또는 폐지는 재무이사의 허가를 얻어 학회 명의로 개설하고 폐지한다.

- ② 금융기관과의 거래명의인은 학회 명의로 한다.

제21조(비용과 수익의 인식기준)

- ① 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 ②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따라 계상한다.

제22조(결산)

- ① 회계 책임자인 재무이사는 회계결산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결산보고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입세출결산명세서
 4. 합계잔액 시산표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장 분과, 지부행사

제23조(행사예산집행) ①분과 또는 지부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및 국내행사 예산 집행시 학회 회계 사무규정을 따라 집행 하여야 하며, 예산의 사용 내용은 재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1000만원 이상의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고 지출 하여야 한다.

②분과 또는 지부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및 국내행사예산의 집행 및 관리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한 연구개발비의 관리 기준에 준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24조(행사 후 정산) 분과, 지부의 각종 국제 및 국내행사는 행사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상의 세부사항은 재무회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여비 규정

제정 : 2000.5.26, 개정: 2012. 9. 14, 개정 : 2017. 12. 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이하 "학회"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원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여비의 구분) 출장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원무 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實地)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결정된 노선의 교통수단에 완급의 구분이 있을 때에는 급행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학회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학회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숙박할 때에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수행 경비) 출장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신료 등 각종 경비는 가능한 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6조(전도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을 전도할 수 있다. 다만, 개산에 의하여 전도 받았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국내 여비

제7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항공요금,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식비, 숙박비, 현지교통비의 7종으로 한다.

제8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한한다.

제9조(운임의 구분)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 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제10조(운임의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실비운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실비를 지변(支辨)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현지교통비 등 지급) ①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②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학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근거리 교통비) ① 교통비는 제2항에 정하는 지역에서 공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로서, 이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교통비의 적용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으로 한다.

제3장 국외 여비

제14조(운임) 국외여행자에 대한 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체재비) 국외여행자의 체재비는 체재하는 여행일수에 따라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기내박과 기내식은 제외한다. 다만, 국외 출장 시 초청자가 식비와 숙박료를 부담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출장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보칙

제16조 (임원이 아닌 회원의 여비) 공무를 위하여 임원이 아닌 회원을 출장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 원)

구분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임원 사무국장	고속열차 (특실)	실비	실비	실비	30,000	실비	40,000
직원	고속열차 (일반)	실비	실비	실비	30,000	실비 (상한액 7만원)	40,000

1. 고속철도 운행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철도 요금을 적용한다.
2. KTX 및 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속버스(우등) 요금을 적용한다.
3. 운임 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근거리 교통비

현행 지역 구분	세부 지역 구분	교통비(원)
서울 시내	서울전역 (과천 포함)	10,000
경기, 인천	성남,안양,군포,의왕,안산,시흥,광명,부천,김포,인천 외	20,000

[별표 2] 국외여비 기준표

(단위 : US달러)

구분		운임 (항공)	체 재 비 (1일당)			비고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임원 사무국장	가	실비	35	실비	100	가 :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런던, 파리,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
	나	“	35	실비	80	
직원	가	실비	30	실비	80	
	나	“	30	실비	80	

10.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편집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 : 1984. 3. 14, 개정 : 1993. 3. 13, 개정 : 1994. 10. 15, 개정 : 2012. 9. 14 개정 : 2017. 12.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출판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편집운영위원회와 저널별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 ① 편집운영위원회는 편집부회장, Editor-in-Chief, 편집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부회장이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Editor-in-Chief, Vice Editor-in-Chief, Editor,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Editor-in-Chief이 맡는다. 위원회 위원은 Editor-in-Chief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 ① 편집부회장 및 편집이사의 임기는 학회 정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
- ② Editor-in-Chief, Vice Editor-in-Chief, Editor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최장 9년). 단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1년 단위에서 임기를 종료할 수 있다.
- ③ Editor-in-Chief 선정과 연임은 편집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⑤ 편집이사는 Editor의 역할을 겸임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 ① 편집운영위원회는 저널을 포함한 정기간행물, 학회보, 도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편집관련 제반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2. 편집관련 예산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3. 정기간행물의 발간주기변경, SCI 등재추진 및 등재유지, 논문철회 등과 관련한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의 심의 및 이사회 상정에 관한 업무
 4. 저널 이외의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간에 관한 업무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 ② 편집위원회는 대한금속·재료학회지,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재료마당을 발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 등 저널관련 제반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2. 발간주기변경, SCI 등재추진 및 등재유지와 관련한 제반 업무
 3. 발간관련 제반 업무
 4.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의 확인 및 논문철회와 관련한 업무
 5. 논문상 수상자의 선정
 6. 기타 편집관련 업무

제6조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널의 편집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이 대외적인 사항 및 예산 집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편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운영위원회는 각종의 간행물을 기획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수가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차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재료마당 및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예산수립 이전에 편집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각 조항을 능률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① 편집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편집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7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11.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정 : 1962.9.28. 개정 : 2012. 9.14

제1조 ①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학회 논문지(대한금속재료학회지,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Electronic Materials Letters)에 투고할 수 있다.

1. 연구논문(Research Paper): 금속 및 기타 재료의 학술 또는 기술에 관한 창의성 있는 완성된 논문
2. 단논문(Technical Note), 연구교신(Comment and Reply), 리뷰논문(Review paper)을 투고할 수 있다.

② 본 학회 회원은 기술해설, 기술자료, 기술동향, 강좌 등의 내용을 재료마당에 투고할 수 있으며 재료마당의 원고 작성은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원고작성 지침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2조 논문투고자 및 교신저자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논문지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연구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다른 학회에 투고되거나, 간행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 논문의 투고는 온라인으로 하며, 각 논문의 홈페이지에서 투고 한다.

제5조 원고작성은 한글(hwp)이나 MS워드(doc)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는 MS워드 파일로만 작성한다.

제6조(논문의 학술어) 대한금속 재료학회지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투고도 가능하며,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Electronic Materials Letters는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제7조 논문의 단위는 SI, CGS 또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

제8조 논문의 분량은 학회지 인쇄면 기준으로 단논문과 연구교신은 4면 이내, 연구논문은 10면 이내, 리뷰논문은 15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정 및 교정) 논문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저자가 최종교정을 보도록 한다.

제10조(저작권) ①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임의로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었을 경우 별도로 정한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료마당원고 투고자에게는 학회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투고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 별쇄본은 신청한 저자에게만 발송하며 그 실비를 받는다.

제14조 참고문헌의 학술지명은 널리 알려진 약기명으로 표기하며, 세부적인 약기명의 표기 기준은 Web of Science에 표기된 약기명을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2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12.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정 : 1976. 2. 6 개정 : 2012. 9. 14

제1조 이 규정은 대한금속·재료학회지,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Electronic Materials Letters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① 학회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심사 진행한다.

1. 논문접수는 사무국에서 하며, 접수 즉시 논문접수번호를 투고자에게 안내한다.
2. 접수된 논문은 Editor-in-Chief이 검토한 후 담당 Editor를 선정한다.
3. 담당 Editor는 3명 이내의 심사 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4.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의 판정을 바탕으로 편집이사 또는 Editor가 종합판정을 한 후 Editor-in-Chief이 최종적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제3조 논문 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4단계로 판정한다.

제4조 수정 후 재심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제5조 논문의 게재불가 판정에는 판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은 논문 게재 여부 이외에 논문 중 일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2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13.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사업위원회 규정

제정 : 1986. 5. 15 개정 : 2009. 3. 13 개정 : 2012. 9. 14 개정 : 2015. 12. 11

제1조 본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본 회의 각종 사업에 관한 기획을 담당한다.

제3조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무, 재무, 인사, 기획 관련 사항
 2. 대외협력 관련 사항
 3. 국제사업 관련 한중일 관련학회(JIM, CSM) 와의 정기적인 학술교류 및 지속적인 관계유지 확대, 한중일 회장단 교차 방문, KIM-JIM, KIM-CSM 공동심포지엄,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에 관련된 행사유치,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국제학술대회 분류 및 학회 또는 분과위원회 차원의 참여여부 결정, 기타 국가와의 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
 4. 지부 및 지부 사업 관련 사항
 5. 학회의 사회봉사를 통한 대외 위상 제고
 6.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강연 및 교육 지원
 7. 학회 홈페이지가 재료관련정보의 중심이 되는데 필요한 사업 추진
 8. 기타 본 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KIM-JIM, KIM-CSM 공동심포지엄은 학술위원회와 협력한다.

제4조 ① 본 위원회는 사업부회장, 사업이사 및 사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사업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사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은 사업담당 부회장이 맡으며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본 위원회 결의사항 및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14.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 2009. 3. 13 개정 : 2012. 9.14 개정 : 2015. 12. 11

제1조 본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춘추계 학술대회를 담당하며, 행사 6개월 전에 해당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조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조직위원장 및 조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① 본 위원회는 학술부회장, 학술이사, 학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술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학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3. 학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맡으며 학술이사 및 학술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학술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① 학술대회 조직위원장(Meeting Chair)은 해당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사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 ②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 ③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심포지엄 주제 및 심포지엄 책임자(Symposium Organizer)를 최종 결정하고, 이때 심포지엄 구성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Open Platform을 지향한다.

제8조(학술대회 심포지엄 구성)

- ① 학술대회 심포지엄 구성은 상향식, 하향식을 모두 수용하여 구성하되, 특별회원사 다변화를 위해 기업관련 심포지엄을 매년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원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체 초청강연 기회를 확대한다.
- ③ 관심 주제 중 1개 이상을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제9조 본 위원회 결의사항 및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15. 학술강연 및 발표초록 투고 규정

제정: 1983.7.21 개정: 1988. 5. 14 개정: 2000. 5. 26, 개정: 2012. 9. 14 개정: 2013. 3.15 개정: 2017. 3. 10
개정: 2018. 5.18

제1조 본 규정은 학술발표 및 발표초록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대회 발표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학회에서 초청한 초청강사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3조 ① 발표는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초청)강연으로 구분하며 발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 학회 회원
2. (초청)강연 : 해당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인자
단, 구두발표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발표 내용이 미진한 경우 수정 보완 또는 포스터발표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① Plenary Lecture, 총회강연 및 학회상 수상기념강연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Plenary Lecture 또는 총회강연은 회장단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POSCO학술상(춘계), 세아해암학술상(추계) 수상자를 강연자로 결정한다.
2. 학회상 수상기념강연은 POSCO학술상, 세아해암학술상, LS학술상, 현송공학상, 석천학술상, 기술상, 전자·정보재료상, **김용진상**, 윤동석상, 서정상, 철재상, 청웅상, POSCO젊은철강상 수상자 중에서 결정한다.
[2018.9.14. 개정]

제5조 ① 발표초록은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로 발표할 경우 영문으로 작성하며 다음 순서를 따른다.

1. 작성순서는 발표제목, 발표자 성명, 발표자 재직처, Abstract의 순서로 작성한다.
2. Abstract는 발표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3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제6조 본 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3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16.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기술위원회 규정

개정 : 1984. 3. 14 개정 : 1987. 3. 20 개정 : 2009. 3. 13 개정 : 2015. 12.11

제1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규칙 34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위원회는 금속·재료에 관한 기술의 조사, 기술지도, 기술강습 및 연구업무 등의 추진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 및 연구업무에 대한 방침 및 연구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부 관련 연구, 기술검토 및 관련 학·협회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대학, 국·공립 및 민간의 연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부, 기타 단체 및 회원단체에서 연구비 또는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연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현장기술자를 위한 각종 기술 강습회를 추진하며 해당 전문가를 선정하고 지역별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필요 강연을 개최 해주는 업무
6.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이 가능한 강연 지원 업무
7. 기타, 중소·중견기업과 학회와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① 기술위원회는 기술담당 부회장, 기술이사, 기술위원,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기술담당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기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3. 기술위원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담당부회장이 맡으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술이사가 맡는다.

제6조 기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7조 각 분과위원회의 운용은 기술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17.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분과위원회 규정

제정 : 1987. 3. 20 개정 : 1987. 12. 5 개정 : 1988. 9. 16 개정 : 2004. 5. 21 개정 : 2005. 1. 21
개정 : 2009. 3. 13 개정 : 2011. 5. 20 개정 : 2011. 7. 15 개정 : 2012. 11. 14 개정 : 2017. 5. 19
개정 : 2018. 1. 18

제1조 본 규정은 본 회 규칙 제34조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금속 및 재료에 관한 학문 및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는 본 학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제4조 ①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철강분과위원회, 2. 재료분석분과위원회, 3. 상변태분과위원회, 4. 재료강도분과위원회, 5. 적층제조 및 분말분과 위원회
6. 가공분과(주조 및 응고,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등)위원회, 7. 비철금속분과위원회
8. 전자재료분과위원회, 9. 금속역사분과위원회, 10. 전산재료과학분과위원회, 11. 집합조직분과위원회
12. 복합재료분과위원회, 13. 마그네슘분과위원회, 14. 생체재료분과위원회
15. 마찰마모분과위원회
16. 융합재료과학분과위원회, 17. 열전분과위원회, 18. 에너지재료분과위원회, 19. 나노소재분과위원회
20. 여성발전특별분과위원회
21. 코엔트로피합금분과위원회
22. 타이타늄분과위원회, 23. 알루미늄분과위원회

제5조 ① 분과위원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 학회의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시 논문발표
2. 연구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① 분과의 설립 및 해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과의 설립은 회원 30인 이상의 발기로 설립의 취지와 발기인 명단을 포함한 분과설립요청서를 학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학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는다.
2. 분과의 해체는 최근 3년간 심포지엄 등 학술 활동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 학회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면 분과로 지정한다. 학회는 휴면분과 위원장에게 안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기술위원회에서 휴면 분과로 지정된 분과는 지정된 일로부터 2년 동안 분과 활동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 별도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해당 분과를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과위원장이 분과 총회를 거쳐 분과통합이나 자진폐쇄(해체)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술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019.1.18.]

제7조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총회 및 분과간사위원회를 가지며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총무간사위원 1인
3. 간사위원 10인 이상

제8조 각 분과의 위원장, 총무간사위원, 간사위원의 임면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과 간사위원은 각 분과마다 분과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분과 위원장 및 총무간사위원은 간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여, 학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인준한 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 위원장 후보자 선출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분과 위원장, 총무간사위원, 간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⑤ 분과 위원장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학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회에 해임을 부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있는 경우 해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분과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단, 해당 기간까지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이사회 인준이 부결된 경우, 학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적격한 분과 위원장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임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을 위반한 자
2. 법령, 학회 정관 및 규칙, 규정 등의 제 법규를 위반한 자
3. 학회의 위상을 손상하거나 재산 등에 손해를 가한 자

제9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술위원회 위원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무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 및 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위원회 위원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2년 1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7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18.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 1996. 1.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관 제6조, 학회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학회의 사업 중 당해 연도에 종결할 수 없는 사업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기획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기획
2. 본 학회의 규칙 및 규정의 검토
3. 차기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조(구성) 기획위원회는 담당부회장과 약간 명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한다. 담당부회장은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기획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기획위원의 임기는 회장단회에서 결정하고,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정기총회 전에 차기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199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 국내/국제학술대회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규정

제정 : 2011. 7.15, 개정 : 2014. 3. 7, 개정 : 2017. 5.19

제1조((목적) ① 국내/국제학술대회 행사개최에 따른 지원 규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학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학술 행사의 범위, 사무국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
2. 학회와 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의한 학회 명예 훼손 및 탈세 방조 방지
3. 학회에 부과되는 경비(카드수수료, 법인세, 인건비 등)에 대한 간접비 명문화

제2조 학회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등록비와 후원금 등)의 집행방식은 학회의 회계처리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회 주최/주관 국내외 학술대회의 경우 모든 정산은 학회에서 이루어지고, 행사 잉여금은 학회 발전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학술대회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행사조직위원회에 활동비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분과주관 국제학술대행사인 경우에는 행사 잉여금의 70% 이하를 분과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분과주관 국내학술행사의 경우에는 전액을 분과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조 (사무국의 지원 내용) ① 사무국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참가비 및 광고비 수납 대행
2. 학회 매체(학회지, 홈페이지, 이메일)를 통한 홍보
3. 행사 장소 섭외를 포함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행사주최자의 의무 및 후원) ① 행사 내용과 사무국의 지원요청을 명시한 '이행의무 협약서'(별첨양식)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금속·재료학회에 부과되는 직접비용(카드수수료, 인건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에서 다음의 간접비를 학회에 납부해야 함

1. 학회가 수납을 하는 참가비의 10%
2. 학회가 수납을 하는 광고비 및 후원금의 15%

③ 행사 종료 2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 결산 내역, 이익금 활용 방안이 포함된 종료 보고서 제출해야 함

④ 학회계정을 이용하는 학술행사 후원의 경우에는 간접비 부분을 이행협약서에 기재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KIM 국내/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이행 약속서

1. 행사명 :

2. 행사 기간 및 장소 :

3. 행사 책임자(위원장) :

4. 행사 대여금(필요시) :

5. 이행 책임과 의무

- (1) 행사 책임자(위원장)는 대한금속·재료학회 국내/국제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 규정에 따라 상기 명시된 행사를 진행한다.
- (2) 행사 정산은 행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 결산 내역, 이익금 활용방안이 포함된 행사 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3) 행사 진행에 따른 모든 지출은 학회 회계 규정에 준하여 지출하고, 지출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

6. 대여금의 반환

- (1) 행사 대여금은 행사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학회에 반환한다.

7. 행사 수수료

- (1) 국제학술행사 수수료는 행사 직접비용(카드 수수료, 인건비, 법인세 등)을 포함한 간접비로서, 학회가 수납을 하는 참가비 수입의 10%와 광고비 및 후원금 수입의 15%를 학회에 납부한다.
- (2) 학회 주최/주관 국내외 학술대회인 경우 모든 정산은 학회에서 이루어지고, 행사 잉여금은 학회발전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학술대회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행사조직위원회에 활동비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분과주관 국제학술대행사인 경우에는 행사 잉여금의 70% 이하를 분과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분과주관 국내학술행사의 경우에는 전액을 분과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3) 학회계정을 이용하는 후원의 경우 학회 이용 계정 총액의 10%를 간접비로 학회에 납부한다.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XX. . .

행사 책임자(위원장) 성명

(인)

20. ENGE 학술행사 운영 규정

제정: 2013. 5. 14 개정: 2015. 12. 11 개정: 2016. 7.15 개정 : 2018. 3. 9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Materials and Nanotechnology for Green Environment(이하 ENGE)'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관) ENGE는 대한금속·재료학회가 주최하고 ENGE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되, 동학회의 관련분과 위원회 및 타학회와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 2장 위원회

제3조(조직위원회 구성)

- ① ENGE 조직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로 구성한다.
- ②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ENGE의 전반적인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③ 조직위원장은 직전 ENGE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ENGE 국제 행사 개최 18개월 이전에 임명하고,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④ 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여 ENGE의 조직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2018. 3. 9 개정]
- ⑤ 조직위원장 임명 후 1년 이내에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차기 조직위원장을 예비선임하여 부위원장직을 일정기간 수행하도록 하며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③항의 절차에 따라 차기 조직위원장직을 수임하도록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 ① 자문위원회는 ENGE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조직위원장을 자문하며 차기 조직위원장을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ENGE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안건, 제10조 ①항 및 ②항에 특정한 안건 또는 조직위원장이 의뢰한 특정 안건에 대한 동의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조직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직전 ENGE의 조직위원장과 공동조직위원장 그리고 현임 EML 편집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조직위원장은 자문의뢰 사안의 발의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조직위원장, 혹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매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ENGE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결정을 위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조직위원장, 공동조직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프로그램, 출판, 재무, 국제협력, 산업체협력, 홍보 등을 담당할 위원 그리고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의 정기적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ENGE 조직위원장이 담당하며, 간사는 총무가 담당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학술위원회)

- ① ENGE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논의와 집행을 위해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술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위원회는 1년에 2회의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학술위원장 혹은 학술위원 과반수 발의로 소집한다.
- ③ 학술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재무 및 회계

제7조(수입) ENGE의 수입은 등록비, 개최지역 지방정부 및 단체보조금, 중앙정부 및 단체 보조금, 산업체 협찬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ENGE 행사 등록자중 학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입회비와 1년 회비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

제8조(지출) 경비의 지출은 사용자(혹 기안자)가 소정 경비신청 양식에 의거 신청한다.

제9조(지출승인) 경비지출은 재무 및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조직위원장 및 위원회 경비지원)

- ① 조직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활동비는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②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회의수당은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 ③ ENGE 위원회 위원이 ENGE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식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비를, 국외출장의 경우 이코노믹클래스 항공운임 및 체재비를, 정부지원 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ENGE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직위원장이 발의하며 이사회의 의결즉시 발효된다.

21. 대한금속·재료학회 연구 부정행위 관련 규정

제정: 2014. 12. 12, 개정: 2016. 7. 15 개정 2018. 5.1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금속·재료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윤리위원회)

- ①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편집담당 부회장 1 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안건이 상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장(Editor-in-Chief)은 당연직으로 포함하며,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7 인 이내로 구성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2 장 연구 부정행위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제출서류 및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위조·변조)

- ①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논문투고과정에서 학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행위를 포함한다.

제 5 조 (표절)

- ①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6 조 (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 7 조 (중복 게재)

- ①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②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게재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④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 8 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①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사실을 인지되는 경우),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후)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2 주 기간 내에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만장일치 의결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 위원 2/3 의 표결 동의로 판정한다.

제 9 조 (징계 및 결과처리) [2018. 5.18 개정]

-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투고금지
 2. 논문이 게재된 경우 논문을 삭제하며, 게재예정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
 3. 관련기관에 학회 연구윤리위반내용을 통보
 4. 회원 제명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 ② 제 1 항의 1, 2, 5 호 징계 내용은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징계내용을 통보하며, 3, 4 호 징계 내용은 이사회회의 승인 후 회장명의로 징계내용을 통보 한다.

③ 연구 부정행위 논문으로 논문상을 수상한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수상금은 모두 회수 한다.

제 10 조 (이의제기)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1 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11 조 (비밀보장)

-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 (또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는)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사안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규정의 개정, 개폐)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 개폐할 수 있다.

제 2 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4.12.12)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6.7.15)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8.5.18)부터 시행한다.

22. 대한금속·재료학회 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015. 12.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문위원은 직전회장, 전전회장을 포함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총무이사가 담당 한다.

제3조(소집) 자문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거나, 자문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3. 학회 사무국 직원인사보상위원회 규정

제정: 2015. 12.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무국 직원인사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직원인사보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은 별도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제3조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직원의 근무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급여, 상여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결과조치)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으로 있었던 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가결된 날(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4. 대한금속재료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제정 : 2017. 5. 19

제1조 본 학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기금을 합리적 조성과 적법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조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학회의 각종 운영 기금의 조성을 통한 모금 활동
2. 각종 운영 기금 및 적립 기금의 적법한 운용
3. 기타 기금의 모금 및 적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운영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 1명 및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장은 학회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매 1월에 이사회에 승인을 득한다.
3. 사업부회장 중 1인과 재무이사 1인, 총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각 각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사업, 운용 결과를 연2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학회 회관의 운영 수익금
2. 각종 기부금
3. 학회 일반 운영 잉여금 및 수익금
4. 각종 기금의 운영 과실금
5. 분과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의 운영 과실금
6. 기타

제6조 (기금의 명칭 및 운영)

1. 신설기금의 명칭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기금의 운영에 관한 지출시 일반 운영 지출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르고, 특별 지출인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금운영에 관한 과실금은 해당 기금에 편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과실금의 범위 안에서 용도를 명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분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표1. 기금 현황(2017년 5월 현재)

번호	항목	비고
1	상기금	
2	학술진흥 및 학회발전기금	일반회계(이익금 등)
3	분과기금	
4	지부기금	
5	국제회의 준비기금	
6	ENGE 기금	
7	정책연구 기금	
8	특별기금	국제학술대회 운영 등
9	회관 이익금	특별회계(이익금 등)